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2005. 1. 14 조례 제133호]

개정 2005. 6. 28 조례 제 149호
개정 2007. 3. 23 조례 제 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8. 6 조례 제 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9. 8. 7 조례 제 330호
일부개정 2011. 1. 7 조례 제 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 8. 1 조례 제 491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6. 9 조례 제 750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9>

제2조(위원회의 기능)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8. 7, 2017. 6. 9>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증평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
5. 증평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개정 2009. 8. 7>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8. 6, 2009. 8. 7, 2011. 1. 7, 2013. 8. 1, 2017. 6. 9, 2018. 12. 28, 2020. 12. 29, 2022. 12. 29>

1. 증평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2. 괴산경찰서장

3.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

4. 증평소방서장

5.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

6. KT 진천지점장

7. 한국전력공사 증평괴산지사장

8. 경제개발국장

9. 기획예산과장

10. 자치행정과장

11. 복지지원과장

12. 환경위생과장

13. 축산산림과장

14. 재난안전과장

15. 건설교통과장

16. 수도사업소장

17. 보건소장

1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 8. 7, 2018. 12. 2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6.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 6. 9>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 6. 9>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9〉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9〉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9〉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위임)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6.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1 까지 생략

②2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동조동항제10호중 “복지문화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동조동항제12호중 “농업경제과장”을 “농정과장”으로, 동조동항제13호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동조동항제14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동조동항제15호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②3 부터 ②6 까지 생략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6 까지 생략

③7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동조동항제9호 중 “행정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동조동항제10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동조동항제13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③8 부터 ④1 까지 생략

부칙(2009. 8. 7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①9 까지 생략

②0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1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②1 부터 ②3 까지 생략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2013. 8. 1 조례 제491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안전건설과장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7. 6. 9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